

34.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 제안자 : 황순자·김대현·김정옥·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
이성오·이재숙·전태선·하중환·허시영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년 10월 13일)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순자 의원)

□ 제안이유

-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3.2.28.)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기준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 등록 및 자동차정비업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5조제1항제2호)
 - 정비요원 자격 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외에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서 공동사업장 사용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개정(안 [별표1])
-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의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장 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개정(안 [별표2])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전반)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익)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을 자동차 정비 뿐만 아니라 보수도장, 차체수리 분야까지 확대하고, 상위법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사항과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개정예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정비요원에 대해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
-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현황을 보면, 보수도장 및 차체수리 자격증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자격증 또한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 전국 자동차 정비·차체수리·보수도장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취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1,498	1,557	1,496	1,360	1,682	1,114	84,242
	기능사	536,563	8,422	7,687	6,169	6,086	4,492	569,419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13,673	1,148	1,135	793	806	583	18,138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1,181	1,342	1,491	1,069	1,160	816	17,059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자격검정통계)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정비요원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보수도장 및 차체수리자격을 가진 자는 정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정비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는 판금, 도장 등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분야 수리에 대해 전문자격증이 없는 정비요원이 작업을 수행할 우려가 있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원 자격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 의결사항을 권고하였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차체 수리와 도장보수 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 후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별표1**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서 공동사업장 사용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개정하고, 전시시설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요건을 삭제하였음.
- **안 별표2**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중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장 면적을 70㎡에서 50㎡로 개정하고, 구비 필요 장비 중 점검정비 기구와 측정기 장비 일부(전조등시험기, 휠얼라이먼트기기)를 삭제하였음.
- 이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규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자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고,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본 규정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있어 미비점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이전부터 몇차례에 걸쳐 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현재까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업체 난립 방지 차원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타시도 조례 개정현황과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상위법 개정 반영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3 개정현황

구 분	2012. 11. 23.	2018. 6. 27.	2018. 11. 23.	2020. 6. 26.
개정내용	·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별표 신설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설면적 50㎡이상, 장비구비요건 중 전조등시험기, 휠얼라이언트기기 미포함)	· 전시시설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신설	·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서 공동사업장 사용인원 '5명을 3명으로 개정	·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의 정비·성능 점검 시설 설치 요건 삭제

○ 그 외 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완화를 위한 상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타시도에 비해 늦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조례 개정 이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함.	○ 대구가 타시도보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 수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체 난립방지 차원에서 조례 반영이 늦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관리업체 등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업계의 과도한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무자격자 자동차 정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점검은 구·군합동으로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무자격자 자동차 정비에 대한 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 중에 있음.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자동차 정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